



#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53호 2026. 8. 10. (월)

## 공 고

○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  |  |  |  |  |  |  |
|----|--|--|--|--|--|--|--|
| 회람 |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4.

### 목 포 시 장

#### 1. 개정이유

- 각종 민간단체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구체화 (안 제8조)

-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변호사 등 자격자, 시민단체 추천인, 대학 부교수 이상,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 의견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7.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6. 8. 4. ~ 8. 24.(21일간)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24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9), 직접방문 등

##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061-270-34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4호)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공인원가분석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해당 사무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br>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br>략)                                                                  |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br>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br>과 같음)                                       |
|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br>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br>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br>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br>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br>한다. | ⑤ -----<br>-----<br>-. -----<br>-----<br>-----.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u>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br/>풍부한 사람</u>                                                                         | 3. <u>변호사 · 공인회계사 · 노무<br/>사 · 공인원가분석사 · 기술사<br/>· 건축사 · 세무사 등 관련 자<br/>격이 있는 사람</u> |
| <신 설>                                                                                                       | 4.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br/>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br/>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br/>천한 사람</u>            |
| <신 설>                                                                                                       | 5. <u>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br/>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br/>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br/>인 사람</u>            |
| <신 설>                                                                                                       | 6. <u>해당 사무 관련 분야에서 5<br/>년 이상 실무 경력자</u>                                            |
| 4. 그 밖에 <u>심의위원회</u> 전문성<br>·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br>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7. ----- <u>심의위원회의</u> -----<br>-----<br>-----                                       |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